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0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4월 22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남상수)

□ 제안이유

- 서민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(안 제8조, 제10조)

- 재정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신설
-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에 일자리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무 신설
- 도시환경국장 분장사무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무 신설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제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사무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데 저탄소 업무는 환경보전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?</p>	<p>○ 환경보전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경제과는 업무성격상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사무가 저탄소 업무에 포함되는 것임.</p>
<p>○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는데 또 다시 일자리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?</p>	<p>○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일자리 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며,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. (이상 총무과장)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세정과, 회계과, 지역경제과, 기업지원과, 일자리정책과, 농산지원과를 둔다.

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경제·유통·노사협력·가스·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6. 일자리 창출·고용안정·공공근로·노사협력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사·제공,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환경행정, 환경정책, 대기관리·수질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무 총괄 관리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80호
의결 년월일	2010. 4. 26 (제160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4. 1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서민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(안 제8조, 제10조)

- 재정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신설
-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에 일자리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무 신설
- 도시환경국장 분장사무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무 신설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세정과, 회계과, 지역경제과, 기업지원과, 일자리정책과, 농산지원과를 둔다.

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경제·유통·노사협력·가스·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6. 일자리 창출·고용안정·공공근로·노사협력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사·제공,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환경행정, 환경정책, 대기관리·수질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무 총괄 관리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재정경제국에 두는 과) ①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세정과, 회계과, 지역경제과, 기업지원과, 농산지원과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 1.~3. (생략) 4. 경제·유통·노사협력·가스·에너지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<신설></p> <p>6. 농업행정·축산유통·자연학습·도시원예에 관한 사항</p> <p>제10조(복지문화국에 두는 과) ①~② (생략) 1. 주민서비스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·평생교육·실업대책·공공근로·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2.~5. (생략)</p> <p>제10조의3(도시환경국에 두는 과) ①~② (생략) 1. (생략) 2. 환경행정,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3.~7. (생략)</p>	<p>제8조(재정경제국에 두는 과) ①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세정과, 회계과, 지역경제과, 기원지원과, 일자리정책과, 농산지원과를 둔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4. 경제·유통·가스·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5. (현행과 같음) 6. 일자리창출·고용안정·공공근로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7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</p> <p>제10조(복지문화국에 두는 과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사·제공,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p> <p>2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의3(도시환경국에 두는 과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환경행정, 환경정책, 대기관리·수질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무 총괄 관리 3.~7. (현행과 같음)</p>